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패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단순가공공정을 거쳐 식용으로 사용되는 내용물과 그 밖의 혼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재활용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6조(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폐각 등 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포함한다)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폐기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③ 분리배출의무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인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행명령 등) 시·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수집·운반·보관·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분리 배출·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명령 등
2.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수산부산물 또는 침출수가 누출 또는 유출되거나 누출 또는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누출 또는 유출된 수산부산물 또는 침출수의 처리·정화명령 또는 누출·유출 방지조치 명령 등
3. 수산부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해당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명령 등

4. 분리배출의무자, 처리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초과한 수산부산물의 처리 명령 등

5. 기타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의 개선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령 등

제9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대상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있는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분리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리배출시설의 설치비용과 시설운영 인력의 인건비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리배출시설의 설치비용과 시설운영 인력의 인건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체로 인해 운반 능력이 감소한 경우

나. 보관장소를 변경하거나 보관시설을 교체한 경우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산부산물의 기계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다. 수산부산물의 처리방법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때는 별표 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5에 따른 부과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밖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시설 지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3.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접 또는 공공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해양수산분야 공공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생산된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교육, 홍보, 전시, 관련 박람회 개최 및 관련 우수기술 선정
3.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 등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

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6. 법 제15조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16조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관리
2.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교육, 홍보, 전시, 관련 박람회 개최 및 관련 우수기술 선정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9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 중인 수산부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

하여 방치 중인 수산부산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분리배출 및 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제7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수산부산물은 분리배출의무자가 분리배출해야 한다. 다만, 분리배출의무자가 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리배출해야 한다.

나. 수산부산물은 이 영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수산부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다.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막, 배수로 등의 설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수산부산물은 이 영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마.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는 자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 내에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단,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대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이나 수산부산물의 악취가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부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방수포를 바닥에 깔고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수턱 등의 설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산부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수산부산물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라. 수산부산물물의 보관과 관련된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재활용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경우 수산부산물 이외의 플라스틱류 혼합물(코팅사 등)은 분리해 배출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입자·분말 등의 형태로 흘러나가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포장용기 등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 재활용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 다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비고: 악취의 방지에 관해서는 「악취방지법」,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 유출 등에 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10조 관련)

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1) 악취 및 비산(飛散)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 2) 침출수의 토양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재 사용 및 배수로 확보
- 3) 그 밖에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나. 장비: 수산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되거나 덮개로 포장된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가. 시설: 제1호가목과 같은 시설

나. 장비

- 1) 파쇄, 분별, 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를 위한 설비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설비(재활용의 유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2) 건조 장치, 소성로(燒成爐) 등 중간처리를 위한 기계적 설비

다. 인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해당 자격의 기사, 기술사 등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명 이상

[별표 3]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공통사항

- 가. 수산부산물은 이 영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수산부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 나.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막, 배수로 등의 설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수산부산물은 이 영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 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산부산물을 세척 또는 소성(燒成) 등 물리·생물·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의 경우

- 가. 수산부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이나 수산부산물의 악취가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 가. 수산부산물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부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나. 수산부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수산부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과 관련된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재활용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경우 수산부산물 이외의 플라스틱류 혼합물(코팅사 등)은 분리해 배출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입자·분말 등의 형태로 흘러나가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포장용기 등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 재활용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 다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주변(100m 이내)에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받은 때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 비고: 악취의 방지에 관해서는 「악취방지법」,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 유출 등에 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4]

수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12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경 고	허가취소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 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 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7)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별표 5]

수산물부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 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 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 여 수산물부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 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300	600	1000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21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5호	300	300	300
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21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